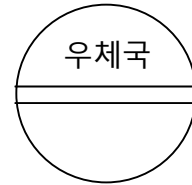
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 18mm  
음성안내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### 주택 재산세

받는 사람

바코드 17mm  
우편반송용

#### 납부장소

은행 방문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 
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상계좌

온라인

### 년 주택 기분 재산세

음성안내  
바코드 18mm

납부하실 금액

까지 납부 시

원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[기분]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시군구	재산세	수납은행 확인용
-----	-----	-------------

납세자:	
기관번호	세목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-------	------

전자납부 번호
------------

납기 내:	까지
세목	납기 내 세액

합계
----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세액	

년 월 일

수납용  
바코드  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  
**직인** 수납인

시군구	년 (주택 기분) 재산세	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	납세고지서 검 영수증
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기관	세목	연월기	과세번호
------	----	----	-----	------

납세자 주소

과세대상

수납용  
바코드

세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과세표준	납기 내	원
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	---

재산세	재산세(주택)			까지	원
	도시지역분				

지역자원시설세				납기 후	원
지방교육세					

합계				까지	원
----	--	--	--	----	---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**장직인** 수납인

전자납부 번호

담당자  
문의처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													
구분	재산세(주택)															
시가표준액 (×)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															
공정시장 가액비율 (=)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															
과세 표준 (×)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															
세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표준세율</th> <th>세율특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천만원 이하</td> <td>0.1%</td> <td>0.05%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td> <td>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</td> <td>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td> <td>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</td> <td>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초과</td> <td>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</td> <td>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												
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												
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
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												
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														
(=)	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															
(=)																
산출세액 (-)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															
감면 (-)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															
세부담상한 초과액 (=)	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												
	상한율	105%	110%	130%												
	(=)												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				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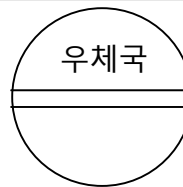
재산세 부과 안내	
과세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</li> </ul>
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</li> </ul>
납부지연 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</li> </ul> <p><b>※ 계산식</b>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</p>
과세표준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</li> </ul> <p><b>※ 과세표준상한액</b>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</p>
세부담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</li> </ul>
구제신청 기한 안내	
이의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</li> </ul>
심판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</li> <li>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</li> </ul>
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
지역자원 시설세	「지방세법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비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00만원 이하</td> <td>0.04%</td> </tr> <tr> <td>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</td> <td>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</td> </tr> <tr> <td>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</td> <td>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</td> </tr> <tr> <td>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</td> <td>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</td> </tr> <tr> <td>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</td> <td>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 </tr> <tr> <td>6,400만원 초과</td> <td>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600만원 이하	0.04%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600만원 이하	0.04%															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														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														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														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		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 18mm

음성안내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**주택 재산세**

받는 사람
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**자동납부 현황**

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)

예금주(소유주)

계좌번호(신용카드번호)

성명(법인명)

자동이체(납부)일

※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
**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 통지서**

귀하(귀 법인)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(신용카드)에서 해당 자동이체(납부)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**년 주택 기본 재산세**

음성 안내

바코드 18mm

납부하실 금액

원

[ 기본]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자동이체 세액공제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귀하(귀 법인)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 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**사군구 년 (주택 기본) 재산세**

도시지역분  
지역자원시설세  
지방교육세

납세고지서

납세번호	기관	세목	연월기	과세번호
------	----	----	-----	------

납세자번호

주소

과세대상

세목	납부할 세액	과세표준	납기 기한
재산세	재산세(주택)		까지
	도시지역분		
	지역자원시설세		
	지방교육세		담당자
합계			문의처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**장직인**

※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													
구분	재산세(주택)															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															
(×)	(×)															
공정시장가액비율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			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															
(×)	(×)															
세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표준세율</th> <th>세율특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천만원 이하</td> <td>0.1%</td> <td>0.05%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</td> <td>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</td> <td>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td> <td>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</td> <td>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초과</td> <td>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</td> <td>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													
	6천만원 이하	0.1%	0.05%													
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
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													
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														
(=)	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			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
산출세액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															
(-)	(-)															
감면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															
(-)	(-)															
세부담상한 초과액	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												
	상한율	105%	110%	130%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															

재산세 부과 안내	
과세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</li> </ul>
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</li> </ul>
납부지연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</li> </ul> <p><b>※ 계산식</b>                     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</p>
과세표준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</li> </ul> <p><b>※ 과세표준상한액</b>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</p>
세부담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</li> </ul>
구제신청 기한 안내	
이의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</li> </ul>
심판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</li> <li>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</li> </ul>
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
지역자원시설세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율 건축물의 기액 × 또는 시가표준액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00만원 이하</td> <td>0.04%</td> </tr> <tr> <td>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</td> <td>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</td> </tr> <tr> <td>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</td> <td>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</td> </tr> <tr> <td>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</td> <td>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</td> </tr> <tr> <td>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</td> <td>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 </tr> <tr> <td>6,400만원 초과</td> <td>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600만원 이하	0.04%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	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
600만원 이하	0.04%															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														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														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														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		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	